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6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4년 9월 5일 회부
- 상정일자: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9월 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안전교통과장)

가. 제안이유

- 평창버스터미널 부지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객의 터미널 이용 편의 및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터미널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터미널 사업 범위(안 제3조)
- 터미널 관리·운영(안 제4조)
- 사용자, 수탁자의 행위제한 및 의무사항(안 제5조 ~ 제6조)

-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안 제7조)
- 취소사항 및 준용 법령, 조례 등(안 제8조 ~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 5. 토론 요지: 「없음」
-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 8. 기타 사항: 「없음」

- 붙임 1.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 제안일자 : 2024. 8. 26.
- 회부일자 : 2024. 9. 5.
- 상정일자 : 2024. 9. 5.

2. 제안이유

- 평창버스터미널 부지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자의 터미널 이용 편의 및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터미널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터미널 사업 범위(안 제3조)
- 터미널 관리·운영(안 제4조)
- 사용자, 수탁자의 행위제한 및 의무사항(안 제5조 ~ 제6조)
-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안 제7조)
- 취소사항 및 준용 법령, 조례 등(안 제8조 ~ 제10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서 군수는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직접 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설치하는 터미널을 관리·운영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대중교통 이용객의 이용 편의 및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터미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4조(터미널의 관리·운영)에서 터미널은 군수가 관리·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여객자동차법 제49조에서 공익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위탁 관련하여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공유재산법 제27조제7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 업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해서 조례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안 제7조(지도·감독)에서 군수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조사·검사 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안 제8조(사용허가 등 취소)에서는 사용자 및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함.

5. 종합검토의견

- 지역의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평창공영터미널을 운영하고자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관계법령의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제정 가능하다고 사료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공영터미널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설치하는 터미널을 관리·운영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6.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18
----------	-----

제출년월일 : 2024. 8. 26.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평창버스터미널 부지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객의 터미널 이용편의 및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터미널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터미널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 터미널 사업범위(안 제3조)
- 터미널 관리·운영(안 제4조)
- 사용자, 수탁자의 행위제한 및 의무사항(안 제5조~제6조)
-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안 제7조)
- 취소사항 및 준용 법령, 조례 등(안 제8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4. 7. 16. ~ 2024. 8. 5.) 결과, 의견제출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4-1025호, 안전교통과-6710(2024. 7. 15.)호
- 2) 규제심사 : 비규제사무 [기획예산과-978(2024. 7. 15.)호]
-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기획예산과-978(2024. 7. 15.)호]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반영 [가족복지과-9239(2024. 7. 14.)호]
-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2351(2024. 8. 6.)호]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과-2797(2024. 8. 14.)호]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평창군 공영버스터미널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평창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백오1길 3(하리 57-1번지, 하리 58-5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사업의 범위)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터미널 이용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관리·운영
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터미널의 관리·운영) ① 터미널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라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하거나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터미널을 위탁할 경우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행위제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2.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3.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4. 기타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6조(의무) ① 사용자와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와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와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 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등 취소) 군수는 사용자 및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물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경우
2. 제5조의 행위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용허가 조건과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5. 파산·법인 정리절차개시신청 등으로 관리·운영 능력이 없는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7. 31.]

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의 면허) 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터미널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49조(공영터미널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설치하는 터미널을 관리·운영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터미널 관리 및 운영 등 비용 필요
- 관련조문 : 조례안 제4조(터미널의 관리·운영)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터미널 매입에 따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은 자체
재원 (군비)으로 지출
- 터미널 운영에 따른 매표 수수료와 상가 사용료 징수로 수입금 발생
(※세외수입 처리)

나. 추계 결과

○ 세입(연간기준)

(단위:천원)

구분	내용	산출기초	금 액	비 고
합계	매표,사용료		28,871	
터미널 매표	매표수수료 (수수료율 10.5%)	23,830명 x 1,100원	26,213	
토지사용료	가설건축물 2동 (기사 대기실)	53,160천원 x 50/1,000	2,658	

○ 세출(연간기준)

(단위:천원)

구분	내용	산출기초	금 액	비 고
합계	매표,사용료		122,779	
인건비	매표 2명, 관리 1명	-2,350천원 x 3명 x 12개월	84,600	기본급, 수당,보 험부담금
지출경비	운영비	-1,810천원 x 1식 x 12개월	21,720	통신,수 도,소모 품,수선 등
기타	일반관리비, 이윤,부가세	-일반관리비(순원가 x 5%) -이윤(10%),부가세(10%)	16,459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 재원 및 터미널 매표, 사용료 수입금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도시안전국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연락처	(033) 330 - 2019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4,811	28,871	28,871	28,871	28,871	120,295
운영수입 (매표,사용료)	4,811	28,871	28,871	28,871	28,871	120,295
세 출	24,811	122,779	122,779	122,779	122,779	515,927
관리비 (인건비,운영비)	24,811	122,779	122,779	122,779	122,779	515,927
재원 조달	24,811	122,779	122,779	122,779	122,779	515,927
의	소 계					
존	보조금					
재	지방교부세					
원						
자	소 계	24,811	122,779	122,779	122,779	515,927
체	지방세					
수	세외수입	4,811	28,871	28,871	28,871	120,295
입	군비	20,000	93,908	93,908	93,908	395,632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 자 등)					